

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1. 2.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2. 8.
- 라. 회부일자 : 2021. 2. 8.

### 2. 제안이유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정부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명칭, 목적, 기본소득<sup>1)</sup>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기능(안 제4조)
  - 1)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2)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

1)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 다. 구성 및 임원선출(안 제5조 ~ 제8조)

-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 선출
- 2)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라. 회의 운영(안 제9조 ~ 제13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 마. 실무협의회 및 시·도별 협의회 운영(안 제14조 ~ 제16조)

- 1) 실무협의회 위원은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
- 2)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

#### 바. 사무국(안 제17조 ~ 제18조)

- 1)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
-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

#### 사. 경비 및 결산 등(안 제19조 ~ 제24조)

- 1)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3)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 나. 예산조치 : 부담금 편성 예정(2022년 본예산에 편성)

#### 다. 합의기관 : 경기도(행정협의회 구성 제안단체)

## 5. 검토의견

### 가. 제안이유와 관련근거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정부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sup>2)</sup>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기 위해 2021. 2. 8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나. 검토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①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가 있으며,

②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서, 절차상 법률적 문제점은 없음.

③ 또한, 협의회의 규약이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sup>3)</sup>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규약 내용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3)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는 바, 문제점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정부의 편중성

지방의회에 규약 동의안 제출(예정)인 48개 지방정부 중 30개가 경기도 소재 기초단체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경기도를 포함하면 전체의 64.6%가 경기도 소재 지방 정부이며, 서울은 금천구, 중구, 강동구의 3개에 불과함)

구분	협의회 참여 지방정부	구분	협의회 참여 지방정부
서울 (3)	금천구, 중구, 강동구	울산 (1)	울주군
경기 (31)	(광역) 경기도	강원 (1)	태백시
	(기초) 경기도 내 30개 시,군 ※ 남양주 제외	전북 (2)	남원시, 고창군
인천 (3)	연수구, 동구, 미추홀구	충남 (2)	당진시, 부여군
부산 (3)	금정구, 동구, 남구	경남 (2)	양산시, 고성군

② 기존 협의회, 협의체와 운영목적이 중복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소지

금천구는 2020.10월 기준으로 15개 행정협의회, 3개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행정협의회 및 협의체 가입현황 : 붙임2)

더군다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등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사용하는 협의회가 많아, 명칭·성격 중복 및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음.

특히 15개 협의회에 55,600천원, 3개 협의체에 25,500천원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등 각종 협의회, 협의체에 총 81,100천원의 분담금 부담은 예산 낭비로 보일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본 규약 동의안을 가결해서 규약안이 고시되어 발효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본예산에 협의회 부담금이 편성될 예정이어서 (부담금액은 미확정) 예산 편성 전에 협의회 참여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을 구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 가입현황 1부.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의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의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인천광역시시장·경기도지사로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서, 그 밖의 협의회회의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 12. 8.>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 붙임 2

##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 가입현황

(2020. 10월 기준)

### □ 행정협의회 현황(지방자치법 제152조)

연번	협의회 명칭	회원단체	회 장	가입일	부담금 (천원/연)	소관부서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수도권 13개 지자체	구로구청장 안양시장	'99. 4. 29.	-	환 경 과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전국 86개 지자체	서울시 강동구청장	'11. 8. 25.	2,000	건강증진과
3	경부선철도 지하화 추진협의회	수도권 7개 지자체	서울시 동작구청	'12. 5. 3.	-	교통행정과
4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47개 지자체	서울시 성동구청장	'13. 3. 20.	10,000	지역경제과
5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 177개 지자체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13. 3.	4,000	교육지원과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88개 지자체	충남 당진시장	'15. 9. 14.	5,000	아동청년과
7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55개 지자체	수원시장, 강릉시장, 강동구청장	'15. 8. 13.	2,000	마을자치과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42개 지자체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15. 11. 16.	10,000	기획예산과
9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26개 지자체	충남 당진시장	'17. 4. 7.	2,000	기획예산과
10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47개 지자체	서울시 성동구청장	'16. 6. 26.	2,000	지역경제과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36개 지자체	충남 당진시장	'16. 12. 16.	3,000	환 경 과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전국 52개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장	'18. 3. 31.	5,000	교육지원과
13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전국 29개 지자체	서울시 금천구청장	'18. 11. 15.	2,000	문화체육과
1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전국 26개 지자체	구로구청장	'19. 4. 23.	3,600	여성가족과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 111개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장	'20. 8. 27.	5,000	기획예산과

### □ 협의체 현황(지방자치법 제165조)

연번	협의체 명칭	가 입 자치단체	회 장	가입일	부담금 (천원/연)	운영부서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기초지자체	충남 논산시장	'96. 12. 11.	10,000	기획예산과
2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자치구청장	서울시 도봉구청장	'95. 8. 12.	8,000	기획예산과
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광역지자체	전라북도지사	'10. 3. 4.	7,500	지역경제과

## ※ 가입의 법적근거

### (1)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회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회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